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25
----------	-------

발의연월일 : 2025. 10. 17.

발 의 자 : 전현희 · 진선미 · 홍기원
김영환 · 김영배 · 한준호
정태호 · 박상혁 · 이성운
김병주 · 박균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과 함께 도서실로 시작하여 2020년 별관 준공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해 오면서, 헌법재판 연구 지원,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민과 학계, 법률 전문가에게 중요한 헌법·법률 자료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외형적·질적 성장을 지속해 왔음.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 자료 제공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

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등).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헌법재판소도서관) ① 헌법재판 연구지원과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그 밖에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재판관회의) ① ~ ③ (생략)	제16조(재판관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사무처장, 사무차장, <u>헌법재판연구원장</u> ,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3. ----- <u>헌법재판연구원장</u> , <u>헌법재판소도서관장</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9조의5(헌법재판소도서관) ① <u>헌법재판 연구지원과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u> ② <u>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이 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③ <u>그 밖에 도서관의 조직과</u>

	<u>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u>
--	-----------------------------------